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오중석 의원(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상훈, 한기영, 신정호,
경만선, 문장길, 노승재, 김태호,
이경선, 강동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유모차의 교부 및 대여 등과 관련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안 제 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9조(비용 감면 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 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 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비용감면 등)제2항 신설에 따라 장애아동 유모차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678,87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78,870천원으로 연평균 135,77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대상이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18세 미만 지체(488)·뇌병변(1,694) 장애아동은 총 2,182명

-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1, 2급 장애인의 비율이 14.3%이므로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중 14.3%인 312명이 유모차 교부를 필요로 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 14.3%(전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1-2급 비율) = 312명

-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사양을 갖춘 장애아동 유모차 중 조달청 나라장터실제 구입 사례 단가 준용하여 비용산출

※ 산출된 지원단가 : 2,010천원/대

- 유모차 대여비용 단가는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실제 연간 대여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중 3급으로 추정되는 288명의 10%인 29명을 대여수요로 가정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 13.2%(전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3급 비율) = 288명

- 유모차 수리비용 단가는 바퀴교체를 기준으로 시중단가인 10만원을

- 산정하였으며, 교부대수의 절반을 수리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678,870천원(연평균 135,774천원)
 - 유모차 교부비용 + 유모차 대여비용 + 유모차 수리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9조 제2항	유모차 교부	627,120	-	-	-	-	627,120
		유모차 대여	7,250	7,250	7,250	7,250	7,250	36,250
		유모차 수리	3,100	3,100	3,100	3,100	3,100	15,500
소계(b)		637,470	10,350	10,350	10,350	10,350	678,870	
□총 비용(b-a)		637,470	10,350	10,350	10,350	10,350	678,870	

- 유모차 교부 비용 ≙ 627,120천원
 - 산출방식 : 18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중 1-2등급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되는 312명을 유모차 교부대상으로 가정
 하였고 1차년도 일괄교부 전제
 - 2020년 구입비 = 312대 × 21,000천원 = 627,120천원

- 유모차 대여비용 ≙ 36,2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장애아동유모차대여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장애아동 유모차 대여 비용 : 7,250천원
 · 연간 장애아동 유모차 대여비용 : 250,000원 × 29명 = 7,250천원
 ※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182명 × 13.2%(전체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3급 비율) × 10% = 29명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 대여중인 유사 사양제품의 1년 임대료를 기준

으로 단가를 산출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국형)의 ‘장애아동 보조 기기 렌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평균 본인부담금도 연250,000원 수준임을 참고하여 산출)

○ 유모차 수리비용 ≍ 15,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장애아동유모차수리비용)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유모차 수리비용 : 31,000천원

· 연간 유모차수리비용 : 100,000원 × 31대 = 31,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